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7

발의연월일: 2020. 6. 18.

발 의 자: 박홍근 · 윤관석 · 백혜련

천준호 · 이정문 · 서삼석

아뉴진비 · 전용기 · 김경만

장경태·허 영·권칠승

의원(12인)

제안이유

지난 국회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2·4·6·8월의 임시회 집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해도 없었고, 16대 국회에서 2·4·6월 등 '짝수달'임시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임시회가 파행되거나 집회조차 안 된 경우는 도합 14건에 달하며, 20대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 황임.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과 국회 정상화 절차가 없어 상습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음.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며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치의 의무를 다하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심사로 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회 정 상화를 위하여 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로 정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 나.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 또는 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 30조).

-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국회규칙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등).
- 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작성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49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 ① 매년 임시회는 「대한민국헌법」 제47조제1항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2월·4월·6월 1 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여 집회한다. 다만, 집회일이 공 휴일이거나 정기회의 회기 중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②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을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을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月)의 1일(8월은 16일)과 12월 10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총선거가 있는 경우"를 "총선거일이 있는 해당 월에는"으로, "공휴일"을 "공휴일이거나 정기회의 회기 중"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30일"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제2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법률안의 입안, 체계·형식과 자구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담기구를 둔다.

제30조의 제목 중 "여비"를 "여비의 지급 및 환수"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 게는 회기에 속하는 월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분을 환수한다.
- 1. 제49조제2항, 제76조제3항에 따른 의사일정의 작성을 위한 협의를 소속 정당 명의의 의사표시 또는 결의로 거부·기피하는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다만,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 한정한다.
- 2. 의사일정에 따라 개회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소속 정당의 의사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출석하지 아니하는 의원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한다.

사법위원회

제44조제3항 단서 중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를 "제66조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직무"를 "직무·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개회일시 및 회기 전체"로,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를 "위원회 개의시간 및 당일 심사안건 순서를 작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간사와 협의한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과 당일 일정을 지체 없이 위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위원회 의사일정의 변경)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있다.

제5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소위원회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 조의2에서 같다)을 심사하거나 입안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의결로 제21조제5항에 따른 법제전담기구(이하 "법제전담기구"라 한다)에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의2를 제57조의3으로 하고,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검토) ① 제57조제7항에 따라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 요구를 받은 법제전담기구의 장은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제전담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토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검토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의3(종전의 제57조의2)제1항 본문 중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 부된 법률안"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을 "제4항에 따라 바로 본회의에 부 의된"으로 한다.

제58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5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를 "법률안의"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을 "안건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를 "위원회가"로, "제3항 본문"을 "제3항"으로,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를 "법률안에"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장"을 "사법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 중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을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체 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 대상"으로 한다.

②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사법위원회"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 제5조(임시회) ① 매년 임시회는 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헌법」 제47조제1항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 한 법률 | 제3조제3항의 요건 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을 갖추어 2월·4월·6월 1일과 8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여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 집회한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 일이거나 정기회의 회기 중인 된 것을 공고한다.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②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 <신 설> 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 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을 때에는 그 요구 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 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③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 략)

-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정 등) ① (생 략)
 - 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1. 2월 · 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 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u>공휴일</u>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 하다.
 -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 지)로 한다. <후단 신설〉
- 3. ~ 17. (생략) ② (생략) 제21조(국회사무처) ① ~ ④ (생 략) <신 설>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 ② ------1.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 (月)의 1일(8월은 16일)과 12 월 10일----. -----총선거일이 있는 해당 월에는----------공휴일이 거나 정기회의 회기 중-----2. -----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 해당 월의 말일까지---------.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일로 한다. 3.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국회사무처)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법률안의 입안, 체계·형식과

자구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⑤ (생략)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생략)

제30조(수당·여비) (생 략)

<신 설>

의정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단	<u></u> 감기구를
<u>둔다.</u>		
<u>⑥</u> (현행 제5항	과 같음)	
<u> ⑦</u> <u>제6항</u>		
<u>⑧</u> (현행 제7항	과 같음)	
제30조(수당· <u>여비</u>	의 지급	및 환
<u>수</u>) ① (현행 저	세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ㅎ	#당하는
의원에게는 회	기에 속	하는 월
의 「국회의원	수당 등여	게 관한
법률」 제2조부	부터 제7	7조까지,
제7조의2 및 저	세8조에	따른 수
당 등을 지급하	·지 아니	하며, 이
미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지급분
을 환수한다.		
1. 제49조제2항	, 제76조	제3항에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 항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법제사법위원회 가. ~ 바. (생 략)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 <삭 제> 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3. ~ 17. (생략)
- ② (생략)

략)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따른 의사일정의 작성을 위한 협의를 소속 정당의 명의의 의사표시 또는 결의로 거부. 기피하는 교섭단체 소속 국회 의원. 다만, 위원회의 경우 해 당 위원회의 위원에 한정한 다.

2. 의사일정에 따라 개회한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소속 정 당의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출석하지 아니하는 의원

- 1. (현행과 같음)
- 2. 사법위원회 가. ~ 바. (현행과 같음)
- 3. ~ 1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특별위원회) ①・② (생 제44조(특별위원회) ①・② (현행 과 같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u>제86</u> 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 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 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세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제49조(위원장의 <u>직무</u>) ① (생 전략)

② 위원장은 <u>위원회의</u> 의사일 정과 <u>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u> 하여 정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레66
<u> </u>
④ ~ ⑥ (현행과 같음)
에49조(위원장의 <u>직무·위원회 의</u>
<u>사일정의 작성</u>) ① (현행과 같
<u>수</u>)
②위원회 개회일시
<u>및 회기 전체위원</u>
회 개의시간 및 당일 심사안건
순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간사와 협의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작
성한 의사일정과 당일 일정을
지체 없이 위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세49조의3(위원회 의사일정의 변
경)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
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의 일부

를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⑥ (생략)

<신 설>

⑦ ~ ⑨ (생 략)

<신 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소위원회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같다)을 심 사하거나 입안할 때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로 제21조제5항에 따른 법제전 담기구(이하 "법제전담기구"라 한다)에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u>⑧</u> ~ <u>⑩</u> (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제57조의2(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검토) ① 제57조제7항에 따라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 요구를 받은 법제전담기구의 장은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률 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제전담기구의 장은 특별 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토를 마치지 못하였을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 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 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 <u>및</u>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 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 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 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② ~ ⑧ (생 략)
-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 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

<u> </u>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
위원회의 위원장은 10일의 범
위에서 검토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u>제57조의3</u> (안건조정위원회) ①
기금운용계
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
<u>액안</u>
② ~ ⑧ (현행과 같음)
9

때에느 거든기가이 여자으 ㅇ

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 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 료한다.

① (생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⑨ (생 략)

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 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 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제4항에 따라 바로 본회의에 부
의된
<u>. L</u>
① (현행과 같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1 • 9 (혀해과 간음)

3.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 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안: 5일

4. (생략)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 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 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 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③ (생 략)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u>안건(체계·자</u> 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 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

<u><삭 제></u>
4.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u>법률</u>
안의
·
· 1.•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끝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u>안건을</u>

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 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 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 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단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서 삭제></u>

-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 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 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삭 제〉 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 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 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 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 ⑥ 제4항-----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

④ <u>위</u> 육	<u> 원회가</u>			
	<u>제3항</u> -			
		<u></u> 바로	본회의	비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단서	삭
제>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 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되어야 한다.

- ⑦ (생 략)
-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 리대상안건에 대하여 <u>제2항부</u> <u>터 제7항까지의 규정</u>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 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

⑦ (현행과 같음)
8
제2항부
<u> </u>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안에
<u> </u>
 ③ ~ ⑤ (현행과 같음)
< <u>삭 제></u>

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 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 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 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수 있다.
-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

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 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1	

는 의결로 <u>법제사법위원회</u>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 핵소추안을 <u>법제사법위원회</u>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 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u>법제사법위원회</u>가 제 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 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 사·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자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의 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u>사법위원회</u>
②
사법위원회
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u>사법위원회</u>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과) ①
사법
 위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